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8. 31.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2. 8. 18.(목)
- 회부일자: 2022. 8. 18.(목)
- 상정 및 의결: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2.8.31.)

2. 제안이유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자기소유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평균현원)	보육 교직원	원장
가정	알짬 어린이집	도원동, 동원로 45, 414동 103호 (대곡강산타운)	132m ² (지상1층)	20 (17)	7	김손미
민간 (관리동)	꿈동산 어린이집	용산동, 성지로 12 (성서7주공 아파트)	124m ² (지상1)	34 (24)	6	김명선
	라운키즈 어린이집	장기동, 한들로 55 (장기초록나라아파트)	134m ² (지상1)	31 (30)	9	유선영
	봄소리 어린이집	상인동, 송현로7길 9 (상인화성파크드림 2단지)	147m ² (지상1)	33 (32)	9	김규리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선정일로부터 5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 장기임차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항임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달서구 내 가정어린이집 1곳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3곳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공개모집을 통해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및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인 알짬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20명에 현원 14명, 종사자 7명인 가정어린이집으로 2022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공립 장기임차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인 꿈동산·라운키즈·봄소리 어린이집은 공개 모집한 6곳 중에 사전서류 심사를 통과한 3곳으로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임.
- 용산동 성서주공7단지 아파트 내 소재하는 꿈동산 어린이집은 1988년 5월 7일 인가되어 보육교직원 6명이 정원 34명에 연평균 현원 24명을 돌보고 있으며
- 장기동 장기초록나라 아파트 내 소재하는 라운키즈 어린이집은 2001년 5월 10일 인가되어 보육교직원 9명이 정원 31명에 연평균 현원 30명을 돌보고 있으며
- 상인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내 소재하는 봄소리 어린이집은 2002년 12월 27일 인가되어 보육교직원 8명이 정원 33명에 연평균 현원 32명을 돌보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지역 어린이집의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 전환 이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전환된 어린이집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 등을 위한 필요성이 검증되었음을 고려할 때
-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선정절차 및 위탁기간 등이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